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15

발의연월일: 2025. 5. 28.

발 의 자: 박수현·양문석·최민희

김영배 · 조계원 · 위성곤

서삼석 • 김재원 • 이정문

이건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국가유산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국가유 산 보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재 산권과 생활권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갈 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유산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존과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주민 권익 보호, 제도 개선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연구와 함께 규제 완화 미이행 시 주민 보상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와 권익 보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용에 대한"을 "활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를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로 한다.

제2장의2(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제12조의2(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규제 완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장할 것

- 2.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
- 3. 국가유산 정책 및 다른 법률의 지역개발정책과 조화를 이룰 것
- 4.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운용할 것
- 제12조의3(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의 유형 에 따른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국회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 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5(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규 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 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제12조의3제1 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의6(규제 완화 미이행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12조의3제1 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의 규제 완화가 불가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규제로 인하여 현저한 권리 제한이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에 대한 규제 완화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하거나 지원대책을 마련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의 기준,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	제1조(목적)		
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u>활용</u>	<u>활용을</u>		
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ㆍ		
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u>며</u>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	무) ①		
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			
적 정책을 수립· <u>시행하여야</u>	<u>시행하고, 이 과</u>		
한다.	정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		
	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		
	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조화		
	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모		
	<u>색하여야</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4		
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			
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이해관

 을 들어야 한다.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u><신 설></u> <신 설>

<신 설>

관리자, 관리단체 또는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제2장의2 국가유산 규제 완화 제12조의2(국가유산 규제 완화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규제 완 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장할것
- 2.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 고 자율성을 존중할 것
- 3. 국가유산 정책 및 다른 법률의 지역개발정책과 조화를이룰 것
- 4.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 리적으로 규제를 운용할 것 제12조의3(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 청장은 국가유산의 규제를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국 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규제 완 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신 <u>설></u>

<신 설>

- 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 제 완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4(국회보고) 국가유산청 장은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 실적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 제12조의5(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 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제12조의 3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

<신 설>

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규제 완화 미이행에 따른 보상 등) ① 국가는 제12 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 수립·시 행 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유산의 규제 완화가 불가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규제로 인하여 현저한 권리 제한 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에 대한 규제 완화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하거나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의 기준, 대상, 내용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7(경비 지원)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